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62
----------	------------

제안일자 : 2024. 6. 18.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중복 및 사업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관련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며, 협동조합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함
-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수정함(안 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을 “협동조합을”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로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u>따른</u> 데이터를 말한다.</p> <p>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u>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u>를 말한다.</p> <p>3. (생략)</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②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u></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 ----- ----- <u>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u> ----- --.</p> <p>2. -----<u>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u> ----- ----- <u>협동조합을</u>-----.</p> <p>3. (제정안과 같음)</p> <p><u>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lt;삭 제&gt;</u></p>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생략)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데이터 사용 목적
-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 다. 데이터 보관 기간
-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생략)

제8조(홍보) ① (생략)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  
-----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정안 제1항과 같음)

제8조(홍보) (제정안 제1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
2.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 법률,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3.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제8조(홍보)**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